

◇ 美國의 特許審査經過書類  
閱覽要領

國內外를 막론하고 特許審査經過書類의 閱覽은 情報處理의 重要한 過程이다. 특히 出願量이 많거나 技術이 高度化할 수록 審査經過書類의 調査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다. 그 代表的인 例가 美國이며 따라서 미국은 특허 화일의 열람에 대하여 特許法施行規則에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1. Rule 11, Files open to the public(公衆閱覽)

① 특허가 許與된 뒤에는 그 특허의 화일에 關聯되는 明細書, 圖面 및 모든 서류를 일반에게 열람시키며 申請者는 所定料金を 支拂하고 謄本의 交付를 받을 수가 있다. 특허의 終結에 關한 特許抵觸 또는 그에 특허가 교부된 특허출원의 화일도 일반에게 열람시키며 등본의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 다만 商標화일에 關하여는 商標規則 2, 27을 参照한다.

② 本規則 139의 特許權利의 拋棄에 의거하여 提出된 申請을 特許廳이 接受한 출원은 일반 열람에 회부하되 申請者는 요금을 지불한 뒤에 등본을 교부 받는다.

2. Rule 139 Waiver of patent rights(特許權利의 拋棄)

① 出願人은 特許權利를 拋棄하는 書面, 要約刊行에 대한 同意, 출원의 진부를 公衆에 열람시키는 承認과 출원인 및 記錄된 讓受人이나 등록된 辯護士 혹은 代理人에 의하여 署名된 포기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繫屬되는 특허출원



國際動向

에 따른 強行이 가능한 특허에 隨伴하는 權利를 포기할 수가 있다.

② Rule 11 (b)에 定한 바를 除外하고는 포기된 출원도 일반에게 열람시키지 않는다. 다만 美國特許에 關제되는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서 열람이 가능한 때에는 그 출원은 누구든지 출원인에 通知하지 않고 서면신청으로서 열람이 되며 등본도 받을 수가 있다. 포기된 출원은 특별한 注意가 喚起되고 保存되게끔 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일로부터 20年後에 廢棄할 수가 있다.

한번 포기된 출원은 返還되지 않는다.

◇ 西獨의 工業所有權審査經過書類 處理要領

西獨 特許廳은 매년 累增되는 工業所有權出願書類의 保管이 어렵게 되자 一定條件 아래서 그 서류들은 處分하고 있다. 特許廳長의 權限으로 規定한 그 處理要領은 다음과 같다(1968年 9月11日制定).

<處理基準>

特許廳은 保管面積관계로 出願 또는 登錄된 保護權의 記錄을 無期限으로 保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 기록의 技術史에 대하여 後繼者이 教育이나 그외의 특수사정을 위한 특별한

意義가 없는 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들의 다음 기록을 廢棄한다.

1. 보호권이 消滅한 해로부터 10년이 지났으나 필름에 담기지 않은 許與特許.
2. 보호권이 소멸한 해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필름에 담긴 허여 특허.
3. 출원이 論議의 여지가 없이 解決된 해로부터 5년이 지났으나 필름에 담기지 않은채 특허가 허여되지 않은 特許出願.
4. 출원이 논의의 여지가 없이 해결된 해로부터 3년이 지났을뿐더러 필름에 담긴채 허여되지 않은 특허출원.
5. 등록된 해로부터 16년이 지난 등록된 實用新案.
6. 출원의 해로부터 6년이 지났으나 終結된후 3년이 지났을뿐더러 등록은 되지 않은 실용신안출원.
7. 실용신안의 등록된 해로부터 16년이 지난 實用新案抹消事件.
8. 말소된 해로부터 10년이 지난 登錄商標.
9. 출원이 논의되지 않고 해결된 해로부터 5년이 경과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출원.
10. 保護期間 또는 논의의 여지 없이 해결된지 5년이 지난 등록 실용신안 또는 등록되지 않은 실용신안출원.
11. 종결후 50년이 지난 등록된 著作權登錄簿에의 등록출원
12. 등록이 拒絕된 해로부터 5년이 지났을뿐더러 등록되지 않은 저작권등록부에의 등록출원
13. 法的判決이 있는 해로부터 5년이 지났을뿐더러 著作權法에 의하여 법적판결에 대한 訴가 포함된 저작권등록부에의 등록출원.